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777번
----------	-------

2020년 9월 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자 : 2020년 8월 12일
- 다. 회부일자 : 2020년 8월 21일
- 라. 상정결과 : 제29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년 9월 3일, 상정·원안가결)

3

2. 제안설명의 요지(문화본부장 유연식)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을 설립하고 법인의 운영 및 시설관리, 공연예술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 나. 이에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사 무 명 :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 2)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 3) 필 요 성 : 서울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공연, 전시, 세종 문화회관 운영 등 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
- 4) 사무내용
 - 세종문화회관의 운영
 -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위탁하는 사업
- 5) 소요예산 : 41,697,480천원

※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나.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기관 개요

- 1)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 2) 규 모 : 대지 55,758㎡, 건물 63,396㎡ (지하 3층, 지상 6층)

- 공연장(세종대극장, M씨어터, 체임버홀, S씨어터), 전시관(세종미술관, 세종충무공이야기), 교육시설(세종예술아카데미) 등

3) 전경 및 위치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세종문화회관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음.

나. 출연의 필요성

- 세종문화회관은 문화예술 사업 운영 등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시민의 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함.

연도별 세종문화회관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안)
출연금 규모	27,001	28,826	32,831	35,823	41,697
전년대비 증감액	3,145	1,825	4,005	2,992	5,874
전년대비 증감률	13.2%	6.8%	13.9%	9.1%	16.4%

다. 출연규모의 적정성

- 2021년도 세종문화회관 출연금은 416억 9,748만원으로 2020년 출연금 358억 2,255만원 대비 16.4%인 58억 7,494만원이 증가하였음.

〈2021년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출연금	35,822,545	35,822,545	41,697,480	5,874,935	16.4%

〈최근 3년간 출연금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9년		2020년		2021년(안)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세입	세출
계	53,763,950	53,763,950	58,154,773	58,154,773	62,774,520	62,774,520
영업수익/사업비	14,573,443	15,745,003	13,731,181	15,679,149	12,755,238	16,238,163
공연사업	7,350,732	8,189,724	7,383,029	11,235,400	7,757,019	11,001,700
전시사업	404,950	675,447	470,846	753,529	646,447	1,034,280
기획사업	60,000	80,200	0	310,000	0	1,013,000
교육사업	348,680	1,139,550	506,830	1,302,550	545,697	1,090,348
대관사업	2,846,388	1,000,000	2,991,936	1,100,000	2,991,936	900,000
시설운영사업	1,325,351	727,320	1,250,851	604,000	242,000	804,000
북서울꿈의숲운영	2,032,762	3,932,762	923,109	373,671	135,139	162,835
대행사업	204,580	-	204,580	-	437,000	232,000
영업외수익	3,447,500	-	4,092,000	-	7,321,802	-
출연금	32,830,545	-	35,852,545	-	41,697,480	-
잉여금	2,912,462	-	4,509,047	-	1,000,000	-
일반관리비	-	36,280,485	-	42,240,953	-	46,536,357
인건비	-	24,305,070	-	26,240,953	-	28,477,456
성과급	-	1,126,544	-	987,643	-	1,229,045
경비	-	10,848,871	-	15,247,028	-	16,829,856
예비비	-	1,738,462	-	0	-	0

- 2021년도 출연금 주요 증액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근무, 공연 형태 변화(재택, 온라인공연 등) 및 공연 영상화작업, 무인검표기 등 비대면 공연장 시스템 구축 비용, 비대면식 업무 인프라 구축과 시설공무직(미화, 경비, 시설)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확보 등임.

- 시설관리공무직의 인건비 증액분은 노·사 합의서('20.3.31)에

의하여 임금제도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변경됨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호봉급, 직책수당(실장 및 반장), 기술수당, 가족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임.

〈시설 공무원 기본급 및 호봉급 현황〉

(단위 : 원)

구분	인원	월 임금현황		증감액	증감률	2021년 평균 호봉
		20년 5월 기준 기본급	2021년 기준 호봉급			
계	124명	247,617,200	302,473,820	54,856,620	22.2%	
시설	46명	92,653,820	118,531,140	25,877,320	27.9%	9호봉
경비	35명	69,534,850	84,133,210	14,598,360	21.0%	7호봉
미화	43명	85,428,530	99,809,470	14,380,940	16.8%	5호봉

〈세입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예산(안)(A)	2020년 예산(B)	증감액(A-B)	증감율
계	62,774,520	58,154,773	4,619,747	7.9%
자체수입	20,077,040	17,823,181	2,253,859	12.6%
출연금	41,697,480	35,822,545	5,874,935	16.4%
순세계잉여금	1,000,000	4,509,047	△3,509,047	△77.8%

〈세종문화회관 3개년 인건비 현황(2018~2021)〉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예정)
세출	50,119,806	53,763,950	58,154,773	62,774,520
인건비(성과급포함)	23,622,715	25,431,614	27,228,596	29,706,501
인건비 비중	47.1%	47.3%	46.8%	

인건비성 경비는 고정비로서 절감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어 편성하는 예산편성의 특성상, 세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실현 불가능한 세입을 계상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코로나 등 재난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021년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주요 증액사업〉

사업비	2,345백만원 증
- 공연 영상화작업 관련 등 홍보비	363백만원 증
- 무인검표기 등 비대면 공연장 시스템 구축 비용	1,082백만원 증
- 비대면식 업무 인프라 구축	250백만원 증
- 신규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구축(고도화)	650백만원 증

인건비	2,478백만원 증
- 임금상승율(정책2.8%,자연1.4%) 반영	1,144백만원 증
- 시설공무직 정규직전환에 따른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458백만원 증
- 초과근무수당 부족편성분 현실화(요일, 시간)	462백만원 증
- 인건비 증가에 따른 퇴직급여 총당금 증가	173백만원 증
- 인건비 증가에 따른 기관성과급 증가	241백만원 증

- 세종문화회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극장임에 비하여 자체 기획전시 및 전시 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온 것에 대응하고자 융·복합 콘텐츠 전시 사업, 미디어 기반 융복합 예술프로트 등을 통해 전시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전시 사업(2억 2,600만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에서 공연, 전시, 대관 사업 등의 축소 및 취소로 인한 사업수입예산의 현실화를 위하여 공연사업은 기획공연의 축소로 인한 감액(△3억5,000만원), 교육사업은 우리동네프로젝트, 청소년 예술활성화 사업 축소로 인한 감액(△2억 4,400만원)등 세종문화회관의 공공극장으로서의 정체성의 근간사업에 대한 축소 움직임이 우려되는 바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777

제출년월일 : 2020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을 설립하고 법인의 운영 및 시설관리, 공연예술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 나. 이에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1) 사무명 :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2)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3) 필요성 : 서울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공연, 전시, 세종문화회관 운영 등 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

4) 사무내용

- 세종문화회관의 운영
-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5) 소요예산 : 41,697,480천원

※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나.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기관 개요

1)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2) 규 모 : 대지 55,758 m^2 , 건물 63,396 m^2 (지하 3층, 지상 6층)

- 공연장(세종대극장, M씨어터, 체임버홀, S씨어터), 전시관(세종미술관, 세종충무공이야기), 교육시설(세종예술아카데미) 등

3) 전경 및 위치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문화정책과 문화협력팀 정민호 (☎ 2133-2527)